

# 제주도보

제519호 1995. 10. 11.(수)

1. 도산하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도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발행 : 제 주 도  
 편집 : 공 보 관 실  
 전화 40 - 1150

## 목 차

### 규 칙

제주도 규칙 제1650호 제주도미숙감굴유통및판매금지조례시행규칙 ..... 3

### 공 고

제주도 공고 제95-139호 지방도노선폐지에관한공고 ..... 11  
 제95-140호 지방도노선인정에관한공고 ..... 12  
 제95-141호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공고 ..... 13

회												
람												

—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

제주도미숙감굴유통및판매금지조례시행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주도지사 신 구 범

1995년 10월 11일

제주도규칙제1650호

제주도미숙감굴유통및판매  
금지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도미숙감굴유통및  
판매금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감굴 유통 및 판매금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판매금지대상)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감굴의 유통판매금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월말일 이전 생산·출하하는 감굴로서  
당도 8° B×미만이거나 착색비율이 전  
체 과면의 60% 미만인 것을 수확하여  
후숙하는 자

2. 제1호의 내용과 같은 감굴을 카바이트등  
약제를 이용하여 후숙시키거나 착색시키  
는 자
3. 미숙감굴을 수확하여 후숙 및 착색시킨  
후 시설재배 감굴로 위장·포장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3조(조사·확인방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미숙감굴을 유통시키거나 판매시킬 것  
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미숙감굴을 수확한 후 별도의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여 후숙·착색시키는 장소  
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거나 현장 보전을  
위한 사진 촬영
2. 미숙감굴을 수확하여 후숙·착색시킬 우  
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이  
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한 질문

제4조(신분의 표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별지 제1호 서식)를 휴대하  
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방법)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시·군세

조례 및 시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청문)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처분의 통지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부과 징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당해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제 호

미숙감굴유통금지단속공무원증

(사 진)

2×3cm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제주도미숙감굴유통및판매금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미숙감굴 유통금지 및 현장조사에 관한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제	주	도	지	사	]	(인)
	○	○	○	시	장		
	○	○	○	군	수		

(인쇄용지 <특급> 120 g/m<sup>2</sup>)

(뒷면)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제주도 미숙감굴유통및판매금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감굴을 후속시키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후속장소의 확인·조사 및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계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주도미숙감굴유통및판매금지조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일금.                      원정(₩                      )의 과태료를 부과 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시·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 ○ 시 장 . 군 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겸영수증 (납입자용)		회계년도 년
위반사항 :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일금 (W )	원정 ( )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입 기한까지 당(시· 군)금고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시장·군수(인)		수납인

제 호 과태료납부서 (시·군금고용)		회계년도 년
위반사항 :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일금 (W )	원정 ( )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인)		

제 호 영수필통지서 (세입징수관용)		회계년도 년
위반사항 :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일금 (W )	원정 ( )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군금고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당 초

납부일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군 수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납 부 의 무 자		금 액	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일	납 부 기 한		과 태 료 납 부 일	독 축 장 발 부 일	이 의 제 기		
	성 명	주 소				당 초	독 축			이 의 제 기 일	법 원 통 보 일	처 분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처분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제주도 미숙감골유통및판매금지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지방자치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공 고

제주도공고제95-139호

지방도노선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5년 10월 5일

제 주 도 지 사

다 음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기 점	종 점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전용구 간연장 km	중용구 간연장 km	비고
지방도	동부축산 관광도로	제1112 호 선	구좌읍 평대리 1717-1	제주시 봉개동 산78-1	27.3	조천읍	27.3		
지방도	대서 ~ 예초	제1114 호 선	추자면 대서리 4	추자면 예초리 200	5.9		5.9		
지방도	제 2 한라 관광도로	제1115 호 선	안덕면 동광리 산 77	서귀포시 상효동 산108-4	24.0	도순동	24.0		
지방도	서부축산 관광도로	제1116 호 선	한림읍 한림리 1216	안덕면 창천리 155-13	14.3		14.3		
지방도	제 1 한라 관광도로	제1117 호 선	제주시 월평동 산 3	애월읍 어음리 산 7	21.9	어승생 저수지	21.9		

공 고

제주도공고제95-140호

지방도노선인정에 관한공고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5년 10월 5일

제 주 도 지 사

다 음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기 점	종 점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전용구 간연장 km	중용구 간연장 km	비고
지방도	동부축산 관광도로	제1112 호 선	구좌읍 평대리 1717-1	제주시 봉개동 산78-1	27.3	조천읍	27.3		
지방도	대서 ~ 예초	제1114 호 선	추자면 대서리 4	추자면 예초리 200	5.9		5.9		
지방도	제 2 한라 관광도로	제1115 호 선	안덕면 동광리 산 77	서귀포시 상효동 산108-4	28.5	도순동	28.5		
지방도	서부축산 관광도로	제1116 호 선	한림읍 한림리 1216	안덕면 창천리 155-13	21.2		14.3	6.9	
지방도	제 1 한라 관광도로	제1117 호 선	제주시 월평동 산 3	애월읍 어음리 산 7	22.9	어승생 저수지	21.6	1.3	
지방도	남원 ~ 조천	제1118 호 선	남원읍 남원리 201-1	조천읍 조천리 2347-3	32.2		30.3	1.9	
지방도	서귀포 ~ 성산	제1119 호 선	서귀포시 상효동 108-4	성산읍 고성리 322-5	34.6	남원읍 표선면	30.1	4.5	
지방도	대정 ~ 한림	제1120 호 선	대정읍 하모리 1453-3	한림읍 한림리 915-9	21.2	한경면	18.0	3.2	

공 고

제주도공고제95-141호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공고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제주도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10월 11일

제 주 도 지 사

다 음

1. 제정이유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를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을 유지케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안에 설치된 이용편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관

리기준의 준수여부등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자가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등의 처분이나 지방자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나 또는 처분 취소, 변경등의 절차를 정함

마. 과태료 징수절차 및 수납되는 과태료의 귀속등을 정함

### 3. 의견제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5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도지사(문의처 ⇒ 제주시 연동 312-1번지, 제주도 관광문화국 관광과 40-1180)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